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계융합·학생설계 전공 운영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육혁신처), 02-970-9311

제정 2016. 2. 19.

개정 2016. 11. 17.

개정 2017. 7. 5.

개정 2017. 11. 29.

개정 2018. 1. 30.

개정 2018. 12. 17.

개정 2019. 7. 30.

개정 2019. 12. 9.

개정 2020. 5. 18.

개정 2021. 3. 2.

학칙개정 2021. 10. 1.

개정 2022. 1. 13.

개정 2023. 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54조에 따라 연계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8., 학칙개정 2021. 10.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계융합전공' 이란 둘 이상의 학부(과) 및 전공분야가 연계하여 별도 (확장·심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말한다. (개정 2020. 5. 18)
- 2. '학생설계전공' 이란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공을 말한다.
- 3. '본 전공' 이란 학생이 최초 입학하거나 전과, 배정 등으로 소속된 학부 (과) 전공을 말한다.

제2장 연계융합전공

- 제3조(개설 및 폐지) ① 연계융합전공은 둘 이상의 학부(과) 및 전공분야를 가진 교수들이 연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혁신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혁신처장은 융합교육과정위원회 및 교육과정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개정 2017. 7. 5, 2019. 7. 30, 2020. 5. 18, 2021. 3. 2.) ② (삭제 2017. 7. 5.)
 - ③ 연계융합전공 개설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규 개설 이전 학년도 8 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7, 2017. 11. 29, 2020. 5. 18)
 - ④ 연계융합전공은 개설이 승인될 경우 최소 3년간은 운영을 유지한다. 다만, 개설 첫 학기에 10명 미만 충원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며, 그럼에도 해당 교육 과정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융합교육과정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여부를 결정하고, 운영 3년 후부터 매년 심사를 거쳐 10명 기준 3년 평균 충원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자동 폐지된다. (개정 2016. 11. 17, 2017. 7. 5. 2020. 5. 18. 2021. 3. 2. 2022. 1. 13.)
 -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계융합전공을 폐지할 경우에 연계융합전공 주임 교수가 교육과정 운영 및 재정지원 사업 이행 등의 사유로 교육혁신처장에게 유예를 요청하면, 총장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유예기간 경과 후 폐지 여부를

- 융합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통합위원회에서 재심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7, 2017. 7. 5, 2019. 7. 30, 2020. 5. 18., 2021. 3. 2.)
- 제3조의2(융합교육과정위원회) ① 융합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무처에 융합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9, 2019. 7. 30, 2021. 3. 2.)
 - 1. 융합 교육과정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융합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3. 소관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위원은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처장, 학사부처장이 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5, 2018. 1. 30, 2018. 12. 17, 2019. 7. 30, 2021. 3. 2, 2022. 1. 13., 2023. 2. 15.)
 - ③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7. 5, 2019. 7. 30, 2021. 3. 2.)
 - ⑤ 융합교육과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융합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6. 11. 17.]
- 제4조(전공주임교수 및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 ① 연계융합전공의 운영을 통할하고 지도를 위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두며, 전공주임교수는 연계융합전공 참여

-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7. 5, 2020. 5. 18.)
- ② 교육혁신처장은 연계융합전공 운영을 위하여 각 연계융합전공별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연계융합전공 참여교수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가 된다. (개정 2017. 7. 5, 2019. 7. 30, 2020. 5. 18, 2021. 3. 2.)
- ③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5. 18.)
- 제5조(교과목 편성) ①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70학점 이내로 하고 "전공필수" 교과목을 5개 과목 이상 21학점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교과목을 신설할 경우에는 3개 과목 9학점 이내에서 "전공선택" 또는 "전공필수"로 편성하여 주관학과(부) 소속 단과대학에 개설한다. (개정 2016. 11. 17, 2017. 11. 29, 2019. 7. 30, 2020. 5. 18, 2021. 3. 2.)
 - ② 원 소속 학과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을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에 편성할 때에는 동일 학년·학기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7, 2017. 7. 5, 2017. 11. 29. 2020. 5. 18.)
- 제5조의2(폐강) ①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교과목의 폐강기준은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학사관리규정」제7조(폐강)를 준용한다. (신설 2017. 11. 29.) (개정 2020. 5. 18., 2023. 2. 15.)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계융합전공 기준 충원율 미달로 폐강되는 등의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9, (개정 2019. 7. 30, 2020. 5. 18.)
- 제6조(이수 허용인원) 연계융합전공 이수 학생의 허용인원은 해당 학년도 연계 융합전공 이수 신청학생 수 및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융합교육과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5, 2017. 11. 29, 2020. 5. 18.)

- 제7조(신청자격) 연계융합전공의 신청은 2학년부터 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은 편입학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8.)
- 제8조(이수신청 및 허가) ① 연계융합전공 이수 허가는 복수전공과 부전공별로 각각 재학 중 한 차례만 가능하며, 연계융합전공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성적처리가 종료된 후 정해진 기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계융합전공 이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5, 2017. 11. 29, 2018. 12. 17, 2020. 5. 18.)
 -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계융합전공 이수 신청서를 접수한 교육 혁신처는 연계융합전공 이수 학생 선발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5, 2019, 7, 30, 2020, 5, 18, 2021, 3, 2,)
- **제9조**(이수 방법 및 학점) ① 연계융합전공은 해당 학생의 선택에 따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5, 2020, 5, 18.)
 - ② 연계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이수학점은 본전공과 복수전공 각각 39학점으로 하며, 편입생은 각각 32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7. 2020. 5. 18)
 - ③ 연계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중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중 전공필수 교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19. 12. 9. 2020. 5. 18)
 - ④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의 "전공선택" 교과목은 타 학부(과)의 교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9) (개정 2020. 5. 18)
 - ⑤ 연계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교육과정 적용은 복수전공 허가 학년도의 교육과정으로 하며, 신 교육과정에 전공필수로 신설되는 교과목은 구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에게는 이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5. 18.)

- ⑥ 연계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이수학점은 본전공 54 학점과 부전공 21학점(편입생은 본전공 32학점과 부전공 2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7. 2020. 5. 18.)
- 제10조(교과목 중복인정) ① 연계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시 소속 학부(과)에서 연계융합전공의 교육과정에 제공한 공통교과목은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할수 있다. 다만, 졸업 학점으로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17, 2020. 5. 18.)
 - ② 연계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 시 소속 학부(과)에서 연계융합전공의 교육 과정에 제공한 공통교과목은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졸업 학점 으로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9, 2020. 5. 18.)
- 제11조(이수연한) ① 연계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이수연한은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0. 5. 18.) ② 연계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 전에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전공 이수 과정에서 탈락된다. (개정 2020. 5. 18.)
 - ③ 연계융합전공이 폐지되었을 경우 기존에 이수 중인 학생들은 해당 연계융합 전공이 폐지된 시점으로부터 졸업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에,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
- 제12조(취소) ① 연계융합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초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계융합전공 이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2020. 5. 18.)
 - ② 연계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이 취소할 경우에는 취득한 연계 융합전공 학점은 부전공 또는 타 학부(과)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개정 2020. 5. 18.)
- ③ 연계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이 취소 또는 졸업할 때까지 부전공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한 학점은 타 학부(과) 교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9) (개정 2020. 5. 18.)
- 제12조의2(졸업심사) 연계융합전공의 졸업심사는 교육혁신처에서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9) (개정 2019. 7. 30, 2020. 5. 18, 2021. 3. 2.)
- 제13조(학위수여) ① 연계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의 이수 학위는 본 전공 학부(과) 학위 수여와 동시에 수여한다. 다만, 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전공 학위수여를 유보한다. (개정 2020. 5. 18.)
 - ② 학적부의 학부(과) 란에 본전공 학부(과) 기재 후 "(복수전공 ○○)"으로 표기한다. (개정 2017. 11. 29)
 - ③ 연계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이 본전공의 졸업요건만 갖춘 경우 본전공 학위를 수여하며, 본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모든 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0, 5, 18.)
 - ④ 학적부의 학부(과) 란에 전공 학부(과) 기재 후 "(부전공 ○○)"으로 표기 한다. (개정 2017. 11. 29.)
- 제13조2(연계융합전공의 명칭 및 학위) 연계융합전공의 명칭 및 학위종별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1. 17, 개정 2020. 5. 18.]

제3장 학생설계전공

제14조(신청 및 승인) ① 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은 2학년부터 할 수 있으며, 해당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서를 지도

교수 및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육혁신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5, 2019. 7. 30, 2021. 3. 2.)

- ② (삭제 2017. 7. 5.)
- ③ 교육혁신처장은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 7. 5, 2019. 7. 30, 2021. 3. 2.)
- ④ 제1항에 따라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체 성적 평점 평균이 3.0(B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7. 5.)
- 제14조의2(이수 허용인원) 학생설계전공 이수 허용인원은 해당 학년도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 등을 감안하여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9.)
- 제15조(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 ① 학생설계전공의 타당성, 교육과정 등을 심사·보완,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7. 5.)
 - ② 교육혁신처장은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를 학생이 신청한 전공의 해당 분야 교수 2명 이상과 학생의 학부(과) 지도교수, 교육혁신처에서 지정한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의 학부(과) 지도교수가 된다. (개정 2017. 7. 5, 2019. 7. 30, 2021. 3. 2.)
 - ③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7. 5.)
- **제16조**(이수방법 및 학점) ① 학생설계전공은 부전공으로 이수한다. (개정 2017. 11. 29.)
 - ② 학생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은 30학점 이내로 구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생설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이수학점은 본전공 54학점 (편입생은 본전공 32학점)과 부전공 21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7, 2017.

11. 29.)

- ③ (삭제 2017. 7. 5.)
- ④ 원 소속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편성할 때에는 동일 학년·학기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 11. 29.)
- ⑤ 학생설계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취소 또는 졸업할 때까지 학생설계전공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한 학점은 타 학부(과) 교과목 이수로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9.)
- 제16조의2(교과목 중복인정) 학생설계전공 및 소속 학부(과)에 공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중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통교과목은 소속 학부 (과)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9.)
- 제17조(지도 등) 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 교수의 지도 및 수강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도교수는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교육혁신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5, 2019, 7, 30, 2021, 3, 2,)
- 제18조(취소) ①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초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설계전공 이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5, 2017. 11. 29.)
 - ② (삭제 2017. 11. 29.)
- 제18조의2(졸업심사) 학생설계전공의 졸업심사는 교육혁신처에서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9, 2019. 7. 30, 2021. 3. 2.)
- 제19조(학위수여) ①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본전공의 졸업요건만 갖춘 경우 본전공 학위를 수여하며, 본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모든 전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학적부의 학부(과) 란에 전공 학부(과) 기재 후 "(학생설계전공 ○○분야)"로 표기한다. (개정 2017. 11. 29.)

제20조(학생설계전공의 명칭) 학생설계전공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 11. 29) (개정 2020. 5. 18., 2023. 2. 15.)

부 칙(제316호, 2016. 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5호, 2016.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은 2017학년 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편입생은 201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91호, 2017. 7.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9호, 2017.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2는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426호, 2018. 1.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57호, 2018. 12.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86호, 2019. 7.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01호, 2019,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 개정은 2019학년도 전기 졸업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33호, 2020.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6호, 2021.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35호, 2021. 10.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61호, 2022. 1.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33호, 2023.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6. 11. 17.), (개정 2017. 11. 29.), (개정 2019. 7. 30.), (개정 2020. 5. 18.), (2021. 3. 2.), (개정 2022. 1. 13.)

연계융합전공의 명칭 및 학위

대학명	전공명	학사학위		
기술경영융합대학	창업융합전공	창업융합학사		
공과대학	스마트카기술전공	공학사		
정보통신대학	무인이동체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정보통신대학	IT융합소프트웨어전공	공학사		
에너지바이오대학	바이오융합기술전공	이학사		
기술경영융합대학	빅데이터경영공학전공	경영학사		
기술경영융합대학	지식재산기술경영전공	지식재산기술경영학사		
정보통신대학	ICT인공지능전공	공학사		
공과대학	반도체융합공학전공	공학사		
기술경영융합대학	핀테크AI경영전공	경영학사		
인문사회대학	한국문화전공	한국문화학사		

[별표 2] (신설 2017. 11. 29.), (개정 2020. 5. 18.), (개정 2021. 3. 2., 2023. 2. 15.)

학생설계전공의 명칭

대학명	전공명	영문 전공명		
	반도체 설계	Semiconductor Design		
주관학과(부)	반도체 데이터 분석	Data analysis for semiconductor		
	세라믹 아트 창작	Ceramic art & creative writing Space Design		
	공간디자인학			
단과대학	브랜드 디자인&마케팅	Brand Design&Marketing		
	시스템반도체공학	System Semiconductor Engineering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7. 5.), (개정 2017. 11. 29), (개정 2020. 5. 18.) (개정 2021. 3. 2.)

연계융합전공 개설 신청서

1. 연계융합전공 명칭(국문, 영문):

2. 연계융합전공 교육목표 및 개요

- ☞ **작성** Tip(※ 본 란은 작성 후 삭제하여 주십시오.)
- 1. 연계융합전공 *과정 이수를 통하여 달성하게 될 지식, 태도, 기술(skill) 등의 자질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개요에는 연계융합전공교과)에서 다룰 교육내용 등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연계융합전공 *과정의 교육목표와 우리대학 6대 핵심역량(EPiC역량)과의 상관관계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대학의 EPiC 역량 중

- '인문 역량'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 '소통 역량'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효율적으로 표현·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 '학문 역량'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깊이를 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 '글로벌 역량'은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 '창의 역량'은 창조적, 논리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및 추론 능력을 뜻합니다.
- '융합 역량'은 서로 다른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및 추론 능력을 뜻합니다.

가. 연계융합전공 교육목표 및 개요

예1) (.....전공) 및 (.....전공)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융·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2) (.....전공) 및 (.....전공)의 연계지식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나. 연계융합전공 교육목표와 EPiC 핵심역량의 연관성

인재상	EPiC역량	연계융합전공 교육목표					
윤리적	인문	예)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해한다.					
인재	소통	예) 다학제간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실천적	학문 예) (전공) 및 (전공)의 융합된 지식을 실목 수 있다.						
인재	글로벌	예) 해외기업 및 창업 진출을 위한 역량을 고취한다.					
창의적	창의	예) (전공) 및 (전공)의 융합된 지식을 활용하여 소프 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					
인재	융합	예) (전공) 및 (전공)의 연계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 여 융·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학위종별:

4. 관련 학부(과) 및 참여교수:

참여구분	이름	소속 학부(과)
참여 교수 1		
참여 교수 2		
참여 교수 3		

5.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가. 교과목

연계 융합					•	학점 개설			
전공 이수 구분	개설학과	학년/ 학기	교과목 코드	교과목명 (영문명칭)	개설 학과	연계융 합전공	학과 이수 구분	비고	
	학과1								
전공	학과2							5개 과목 이상 21학점	
필수	(추가 가능)							이내로 편성	
			신설		신설				
전공	학과1								
선택	학과2								
	(추가 가능)								
	합 계					70학점			
		Ĕ	i /1			0/ <i>L</i>			

나. 신설 교과목 (3개 이내)

교과목명(영문명)	개설학기 (학년-학기)	학점	교과목 개요
과목1	3-1	3	
과목2	4-1	3	
과목3	4-2	3	

다. 연계융합전공 교과목의 EPiC 핵심역량 연관성

- ☞ **작성 Tip(※** 작성 Tip은 작성 후 삭제하여 주십시오.)
 - 본 란은 추후 작성 가능합니다.
 - 각 교과목과 EPiC 역량간의 연관성을 %로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PiC역량 에 대한 설명은 본 서식 「3. 연계전공 교육목표 및 개요」의 작성 tip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명		EPiC핵심역량과의 연관도							
	학점	윤리적 인재		실천적 인재		창의적 인재			
		인문	소통	학문	글로벌	창의	융합		
과목1	3			30%		20%	50%		
과목2	3			20%	40%		20%		
과목3	3			50%		50%			
:	:	:	:	:	:	:	:		

학과 회의록

안 건	□□□연계융합전공 신설								
일 시	장 소								
회의내용	- 학과 또는 전공 소속 교수가 신설예정인 연계융합전공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과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								

20 . .

직위	성명	참석확인	직위	성명	참석확인
학과장	홍길동				
교수	김길동				
부교수	이몽룡				
조교수	강나라				

※ 유의사항

- 연계융합전공에 참여한 교수의 소속 학부(과)장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는 학과회의를 주재, 연계융합전공 신설, 교육과정 개편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회의록에 서명 날인
- 연계융합전공에 참여하는 교수가 속한 학과 또는 전공별로 작성

연계융합전공 이수 신청서(복수전공, 부전공)

학적사항	대	학		학부	(과)		학 년	
	학	번		성	명		휴대폰	
연계융합전공	○○ 전공			시원회트	학 점			
신청명				성적취득	평점평균			

위와 같이 연계융합전공(복수전공,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반드시 복수전공, 부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함.
- 연계융합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은 입학유형별 입학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신입	입학	편입학			
구	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이전 이후		2018학년도 이전	2019학년도 이후		
복수전공	본전공	42학점	39학점	35학점	32학점		
<u> </u>	복수전공	42학점	39학점	35학점	32학점		
부전공	본전공	60학점	54학점	35학점	32학점		
T인 6	부전공	21학점	21학점	21학점	21학점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학생설계전공 이수 신청서(부전공)

		1						
소	속	대	학		학	과(부)	전	공
학	번			성	명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학생설계	전공명	국문: 영문:					신청학점	
전공기	HΩ							
신청/	나유							
학내 관련	병 저고	소속	성	명		전공	상딛	남내용
교수 상담								
유의서	나항	1. 신청하는 학생설: 전공 이상의 교고 2. 소속 학부(과)장, 운영 규정의 학생 3. 학내 관련 전공 적도록 하며, '상 학생설계전공에 대표기	바목으로 판 지도교수 행설계전공 교수 명단 담내용'란0	면성하여야 와 상의하 관련 조형 의 '전공'해 네는 학생(함 나여 작 상을 참 란에는 이 직접	성하고, 연 고 해당 교수! 적인 면담0	계융합·학선 님의 세부적 나 이메일	생설계전공 인 전공을 등을 통해
첨부시	서류	 학생설계전공 교 학생설계전공 이 본전공 이수계획 성적증명서 1부. 	수계획표(결 첨 2)				
본인은 학	·생설계전	공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했습	하니다.	이에 위	와 같이	학생설계
전공을 저	안하고 <i>:</i>	소정의 교과과정·	을 이수?	함으로써	학사	학위를 추	티득하고지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법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		(인)
					지도고	고수 :		(인)
서우고하기	기수대하 .	고 초자 긔칭						

학생설계전공 교육과정표

학생설계전공명 :

개설학과	학년/ 학기 교과목코드 교과		교과목명	학점		개설학과 이수구분	인정
	역기	7/1	개설학과	학생설계 전공	에누ㅜ正		
711							
계							

※ 심사

- 1. 학생설계전공운영위원회에서는 교과목 중 해당 학생설계전공에 적합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는 '인정'란에 '불가'를 기재
- 2. 필수로 이수해야한다고 판정되는 교과목에는 '인정'란에 '필수'를 기재

학생설계전공 이수계획표

학생설계전공명 :

학기	1학기	2학기			
학년도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L				
	L				
			 		
		L			

본전공 이수계획표

학생설계전공명 :

학기	1학기	2학기			
학년도	교과목명	학점	교과목명	학점	
		l			
		 	·		
		l			
		L			

[※] 학생설계전공 이수에 따른 본 전공 이수계획을 기재

연계융합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

인적사항	대 학	학년			성 명		
	학부(과)	학번			휴대폰		
연계융합전공 내 역		연계융	합전공	복수전공		년도	학기
	○○ 전공	승인	승인학기 부전공			년도	학기
		지금	까지	복수전공		과목	학점
		이수	학점 부전공			과목	학점
취소사유							

위와 같이 연계융합전공(복수전공, 부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 연계융합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중인 학생이 복수전공 이수를 취소하고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복수전공 이수로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이수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음.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주임교수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

학생설계전공 이수 취소 신청서

인적사항	대 학		학년		성 명		
	학부(과)		학번		휴대폰		
학생설계 전공내역	○○분야		설계	전공 승인학기		년도	학기
			지금	까지 이수학점		과목	학점
취소사유							

위와 같이 학생설계전공 이수를 취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귀하